

중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수시)
-----------	-----------------------

(2013년 7월 12일)
(상하이 aT)

구분	핵심 내용
I 통관	<input type="checkbox"/> 국무원 판공청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안전업무 강화에 대한 의견 통지 ○ 2013년 6월 16일 국무원 판공청에서 중국 전 지역, 각 관계기관에 영유아 조제분유 안전관리 강화업무 실행과 책임을 촉구

항목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대처 방향
2. 품목의 통관/검역	<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 ○ 약품관리법에 의거 엄격 관리 - 원료, 생산설비, 조제법, 기업 경영제도 감시 강화 - 포장 라벨링 제도 강화 ○ 기업의 책임 강화 - 원료 구매, 저장, 운송의 엄격 관리 - 전자정보기록시스템 구축, 생산자와 판매자가 책임지는 제도 실시 ○ 감독관리 강화 - 기업의 등록관리 엄격 실행, 블랙리스트 사회에 발표 ○ 처벌 강화 - 브랜드 모방, 포장과 산지 위조 등 불법행위는 고급인민법원에서 처리하며, 사회와 국민들에게 발표 ○ 사회감독 매커니즘 구축 - 소비자, 매체, 협회 등의 감독신고 활성화, 품질안전에 대한 홍보교육 ○ 관련 보장조치 보완 - 정부보조, 세제 우대조치, 유제품 표준시스템 보완 *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안전업무 강화에 대한 의견 통지 관련내용은 번역본 참조(첨부 페이지)
	<input type="checkbox"/> 시사점 / 대처 방향 ○ 조제분유 수출업체 등록 통지 - 모든 조제분유 수출상이나 대리상, 수입상은 2014년 5월 1일 전까지 반드시 업체 등록 -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됨을 보장하여야 하며 상품의 생산날짜 혹은 생산번호에 맞는 검측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입과 판매기록 시행 - 미등록업체는 수출금지하며, 유통기한 3개월 이상 남지 않은 조제분유는 접수조차 받지 않음 - 재포장 금지 ○ 라벨링 부착 철저 시행 - 중문 라벨은 국내로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포장 위에 인쇄·부착하며, 중국에서 부착 금지. 중문라벨이 없는 제품은 모두 반품 혹은 소각 처리 함
	<input type="checkbox"/> 발표일자/ 출처 : '13.6.16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

국무원 판공청이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등 부문에 전달하는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 안전업무 강화 의견에 대한 통지

국무원 판공청 [2013] 5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국무원의 각 부문과 직속기구 :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농업부, 상무부, 위생가족계획위원회, 해관총서, 공상총국, 질검총국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안전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이미 국무원을 통과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니 제대로 집행하길 바랍니다

영유아 조제분유의 품질안전은 민생의 중요한 문제이자 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영유아 조제분유의 품질안전수준을 제고하고 식용안전과 믿음직한 조제분유를 보장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역에 달하는 인구의 행복과 국가민족의 미래와 관련되며 경제발전방식을 변화하고 경제증가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는데 깊은 의의를 둔다. 각 지역, 각 유관부문에서는 국무원의 정책 실행을 열심히 관철하여 영유아 조제분유의 품질안전문제를 중시하여 이를 중국식품품질안전작업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전력을 다하여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안전수준 제고의 전쟁에 뛰어들어 소비자의 국산분유에 대한 믿음을 되돌려야 한다. 지방 각급 정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지도부와 조직 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계획방안을 세부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본 지역의 분유품질 안전업무를 착실히 실행한다. 각 유관부문에서는 엄격한 관리를 이행하며 서로의 협력과 지도를 강화하고 각 단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전면적으로 조정을 진행하며 유관부문이 각 지역 업무에 대한 검찰감독을 진행하도록 하며 각 업무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확인한다.

국무원 판공청

2013年6月16日

(이 문건은 이미 공개, 반포되었다)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안전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공업과 정보화부, 공안부, 농업부, 상무부, 위생가족계획위원회, 해관총서, 공상총국, 질검총국

영유아 조제분유는 영유아의 주요 식품으로서 그 품질안전은 다음 세대의 건강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역에 달하는 가정의 행복과 국가민족의 미래와도 관련된다. 당 중앙, 국무원에서는 영유아 조제분유의 품질안전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여 최근 여러 정책을 시행하여 각 지역, 각 유관 부문에서 적극적인 정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조제분유 품질안전의 전체 수준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품질안전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 국산분유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영유아 조제분유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앞으로 품질안전 작업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1. 업무목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유제품 품질안전 감독관리 조례〉와 〈국무원판공청의 유제품품질 안전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 (국무원 판공청 [2010]42호 문건)의 정신을 관철시키며 조제분유의 품질안전을 보장하는 작업을 더 우선적인 사업으로 간주한다. 지방정부의 식품안전 책임과 기업주체의 책임을 엄격히 실현하며 전면적으로 생산경영자가 영유아 분유품질 안전에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 치료(문제현상의 치유)와 치본(문제뿌리의 치유)를 동시에 진행, 정리와 건립 작업 결합, 위법행위 엄격 단속으로 장기적으로 효과 있는 감독관리 기제를 완벽히 하여 영유아 분유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전체 과정의 감독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사회 각 역량을 동원하여 사회감독관리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영유아 분유에 대해 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다스리는 국면을 조성한다.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정책실시를 통하여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안전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며 시민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소비자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유제품산업의 진흥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2. 업무중요점

- 1) **약품관리방법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한다.** 영유아 조제분유의 생산기업의 허가조건을 엄격히 하며 약품관리의 조치에 의하여 기업생산설비와 시설, 원료와 보조재 합격을 엄격히 지키고 생산과정의 통제, 검역검측능력의 제고와 직원소양자질조건, 환경조건 통제와 주동적인 연구개발능력 등에 대한 요구를 높인다. “가루형 영유아 조제식품 양호생산규범“(GB23790-2010)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집행과정의 검찰심사를 강화한다. 영유아 조제분유상품의 조제법, 원료와 보조재의 사용과 포장 라벨링에 관한 제도를 건립한다. 영유아 분유의 전자 정보화관리를 진행하며 상품의 전체 과정을 조회, 추적 가능하게 만든다.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기업의 재심사 재처분 작업을 진행하여 원료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기업이나 생산기술, 설비시설, 검역검측

조건이 낙후한 기업을 생산중지 시키고 정리한다. 정리한 후에도 표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무조건 도태시킨다. 국가 유관 관리감독 부서는 제때에 생산허가를 받은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기업, 수입상과 상품목록을 공포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진위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 조제분유의 신규와 확장사업의 심사를 엄격히 한다. 영유아 조제분유 경영기업의 허가관리를 강화하고 경영조건을 엄격히 심사하며 식품유통 허가항목과 등록항목을 각각의 항목별로 분류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2) 기업의 우선적 책임을 실현한다. 가축양식자와 우유제공소는 전면적으로 유제품 품질의 안전제도를 실시하며 사료, 약품의 과학적 사용과 관리를 엄격히 한다. 우유제공소와 영유아 조제분유기업은 생우유 구매와 저장, 운송제도를 엄격하게 실행하고 불합격 생우유는 주동적으로 보고하고 무해화 처리를 거쳐야 한다. 생우유 품질검역을 엄격히 하고 불합격 생우유가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기업은 자동제어 유원 설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우유 분말과 유청분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여 우유(분유) 원료의 품질합격을 확보한다. 원료와 보조재의 구매에 대한 검역, 생산과정의 통제, 상품출하의 모든 항목을 검역하고 판매기록과 문제 상품을 소환하는 등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전자정보기록시스템을 구축한다. 식품안전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전문적인 식품안전관리인원을 두어 직원들의 교육과 정기적인 트레이닝을 실시한다. 어떠한 기업이든지 위탁하거나 상표를 부착하거나 분산포장의 방식으로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하여서는 안 되며 동일한 조제방법으로 다른 브랜드의 조제분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소, 양의 우유(분) 이외의 원료로 조제분유를 생산하여서는 안 된다.

영유아 조제분유 경영기업은 반드시 감독관리 부문에서 비준한 기업합격상품이나 공개목록에 포함된 합격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여야 하며 공급자한테서 영수증을 요구하는 제도를 엄격히 실행한다. 식품안전관리 인원을 두어 취임 전 교육과 정기적인 트레이닝을 실시한다. 영유아 조제분유상품은 전문 판매구역에서 판매하며 약품 전문 카운터에서 판매하는 것을 시험 시행해본다. 유효기간이 1개월 이하인 분유상품은 반드시 그 사실을 제시하거나 판매대에서 하차시키는 등 처리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불합격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 변질된 조제분유는 반드시 시장에서 철수하고 무해화 처리를 거쳐 문제 상품이 다시 시장에 흘러드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조제분유 수출상이나 대리상, 수입상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수입상은 무조건 수입된 상품이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됨을 보장하여야 하며 수입 시 무조건 상품의 생산날짜 혹은 생산번호에 대응하는 검측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입과 판매기록 제도를 엄격하게 실행한다.

조제분유 생산경영 기업과 수입상은 무조건 품질안전책임규명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행 배상제도를 건립하여 “생산한 자가 책임지고 판매한 자가 책임”지는 원칙에 의하여 배상을 진행한다. 식품안전책임 보험제도의 건립을 탐색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 3) **감독관리 강화.** 젓먹이 가축양식의 규범지도 및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젓소 표준화 규모 양식을 추진한다. 사료, 사료첨가제, 수의약의 생산경영 허가 및 자격심사를 엄격히 해야 하며 일상의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생우유 매입소 및 운송차량의 검사 및 순검을 강화하며 불합격 우유매입소 및 운송차량을 단호하게 금지해야 한다. 항생소, 중금속, 유독유해물질에 중점을 두고 생우유 품질안전 모니터링 및 감독 집행을 강화하여 생우유 품질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영유아조제분유 생산경영업체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 업체가 허가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생산과정 기록 및 등록제도를 이행하는 상황을 검사한다. 생산업체의 검험능력을 심사한다. 영유아조제분유 라벨표기를 규범화하여 포장, 라벨표기 및 수입영유아조제분유 관련 수입증빙 등에 대한 검사 역량을 강화한다. 불법 제품의 시장 진입을 방지한다. 경영업체가 납품업체의 허가증 및 식품합격증 검험하는 것을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 기록검험제도를 설립하여 엄마와 유아용품 판매점이 영유아조제분유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영유아조제분유의 온라인 판매를 규범화하는 관리제도의 제정을 가속화한다. 영유아조제분유 광고홍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생산업체의 식품안전 신용기록을 정비하여 실시간으로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업체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한다.

국내 영유아조제분유 생산업체 등록 관리를 엄격히 실행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는 업체가 국외에 영유아조제분유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검험신청자료를 엄격히 심사하여 유통기한이 3개월이 남지 않은 영유아조제분유는 접수하지 않는다. 포장이 큰 영유아조제분유를 국내로 수입하여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입영유아조제분유 중문라벨은 국내로 수입하기 전에 직접 판매포장 위에 인쇄해야 하며 국내에서 부착해서는 안 된다. 중문라벨이 없는 제품은 모두 반품 혹은 소각 처리한다. 영유아조제분유 리스크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샘플링 조사 제도를 건립한다. 영유아조제분유 샘플링조사는 모든 업체와 모든 품목에 적용되며 샘플링조사기준, 절차

및 결과는 실시간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검사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검험능력을 제고하고 검험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 4) **처벌역량 강화.**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우유 등을 판매하거나 회수하는 불법행위를 엄격히 조사하여 처리한다. 불법한 생우유 매입 및 운송 범죄 집단의 본거지를 처벌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불법으로 비식용물질을 첨가하는 것과 범위나 제한수량을 초과하여 식품첨가제를 사용하는 것과 생산기일 왜곡 및 라벨 수정 등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생산, 경영허가 및 영업집조 없이 영유아조제분유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유명한 영유아조제분유 브랜드의 모조, 특유포장 및 산지 등을 위조하여 홍보하는 것을 엄격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영유아조제분유, 분유원료 및 유청분말 등을 밀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엄격한 법규를 운용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영유아조제분유 불법범죄를 엄중히 처벌한다. 법 집행 및 사법의 연결을 강화시켜 법에 따라 실시간 범죄안건을 이전하여 <고급인민법원, 고급인민검찰원의 식품안전위법형사안건 처리에 대한 적용법률문제의해석>규정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을 심판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상황 및 결과는 실시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 5) **사회 감독메커니즘 구축.** 소비자들이 영유아조제분유 품질을 감독하는 것을 지원한다. 신고경로 소통, 신고보상 실시, 신고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매체의 감독역할을 발휘하여 실시간 매체와 소비자가 보고하는 불법행위 및 품질안전 위험을 처리한다. 허위정보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유제품산업협회 등 사회단체를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 업계 자율 촉진, 시장소비유도 등의 업무를 전개한다. 소비자협회, 과학협회 등 사회조직을 지원하여 영유아조제분유 품질안전지식 및 영유아 수유지식에 대한 홍보 교육을 전개한다. 매체에서 식품안전 과학보급 특집 방송을 개설한다.
- 6) **관련 보장조치 보완.** 영유아조제분유 산업발전 지원 역량을 확대하여 정부보조, 세제상 우대조치 등의 방법을 통해 업체기술조정 및 검사측정능력 제고를 격려한다. 업체인수합병을 지원, 산업집약도 제고, 업체 규범화, 규모화, 현대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경영업체가 영유아 조제분유 판매과정 중 불합리적 비용을 취소하는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영유아조제분유 감독법규제도를 건립하여 영유아조제분유 등 유제품 표준시스템을 보완한다. 정보발표를 규범화하여 전문적인 국가검사 검측기구 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영유아 조제분유의 검험검측 결과 등 정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한다.

3. 업무요구

- 1) **조직지도 강화.** 지방 각급정부가 현지 영유아조제분유 품질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전문 지도팀을 조직하여 구체적인 실시방안 제정, 업무목표 및 실행을 세분화하여 직책 및 업무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식품약품 감독관리 시스템을 조정하는 동안 조율과 지휘를 강화하여 모든 업무를 잘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 각 유관 부서가 <국무원관공청의 유제품품질 안전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국무원관공청발표 [2010] 42호) 집행상황을 검사하여 본 의견에 따라 각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2) **책임실현 강화.** 품질안전 감독관리 책임제도 및 책임추궁제도를 설립하여 등급 관리, 속지관리, 구역담당의 사업방향에 따라 각급 지방정부, 감독관리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각 기구 및 감독관리를 실현하여 완비된 안전책임망(安全責任網)을 형성한다.
- 3) **정보보고 강화.** 각 성급 감독관리 부서가 정보수집 상황을 중요시해야 한다. 업무 경험을 정리하여 실시간 정부식품안전위원회 사무실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하고 중대한 상황은 상급 관련 감독관리 부서에도 참조 보고해야 한다. 또한 부서 간의 교류를 강화하여 업무 중 발견된 문제와 리스크를 실시간 보고해야 한다. 서로 협조하여 감독관리 한다.

※ 원문 : http://www.gov.cn/zwgk/2013-06/20/content_2429394.htm